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온라인플랫폼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금지 등 》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71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운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1. 29.
- (3) 회 부 일 : 2024. 12.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미신고 숙박업소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등(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¹⁾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신고절차 준수확인 및 미신고 공중위생영업 중개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할 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u><신설></u>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통신판

제20조(벌칙) ① (생략)	<u>매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② ----- ----- -----.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 매중개를 한 통신판매중개자 등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물(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²⁾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가 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안전·위생관리상 위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적발 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행해지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숙박업소 이용 중개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온라인 플랫폼에 위치만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만 안내하고, 숙소 주소·상호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건수는 2022년 7건이었던 반면, 2023년 52건, 2024년 115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³⁾

□ 개정안과 같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중개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온

2)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도 있음(제11조제1항제1호).

3) 2024. 12. 04.일자 헬스경향 “불법숙박업 근절 위해 중개플랫폼도 처벌 필요”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72>

라인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불법 숙박업 거래를 방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나아가 숙박업소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첫째, 적용 법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개별법 개정을 통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하겠음.

참고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0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0조) 등 소비자제품의 안전에 관한 일부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확인 표시 없는 제품 판매 금지 등 직접적인 금지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함.

- 둘째, 개정안에서는 제안이유에서 ‘미신고 숙박업소’의 판매 중개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문에서는 목욕장업·숙박업·미용업·이용업·세탁업 및 건물위생관리법을 포괄하는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판매 중개를 금지하고 있어, 해당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⁴⁾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i)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할 것, ii)통신판매의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의 거래 주체가 아니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이 통신판매자와 다름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매중개 대상과 관련된 진위확인이나 적법여부 확인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중개 대상 상품을 일일이 직접 확인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⁵⁾

-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오픈마켓의 특성상 오픈마켓에서는 수많은 상품이 등록·판매되고, 그 판매상품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품질보증 등 판매되는 상품에 관해 신용을 제공하지 않으며 판매자의 신용으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므로, 판매되는 상품이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판매자의 상품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운영자가 그러한 권리침해행위의 직접주체도 아니고,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침해 가능성 내지는 개연성만을 들어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해 판매자의 상품의 등록·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일일이 검색하여 미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금지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음.

참고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도 i)통신판매중개업자가 문제 제품을 인지하여 즉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ii)금지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온라인중개플랫폼 규제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개정안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중개 금지 대상을 숙박업으로 한정하고, 벌칙 대상을 불법 숙박 중개 금지로 명확히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또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벌칙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의무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리 삭제하는 등과 같이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 등을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구 분	의견 내용
법제처	•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직접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존재하는바, 해당 규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법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필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는 일반 규정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기존의 입법례에 부합
법무부	•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의 벌칙 규정은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 중개 금지(제4조의2제2항)에 대한 것으로, ‘신고절차 등 준수 확인의무(제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은 보완필요
문체부·공정위	• 이견 없음
부산광역시	• 통신판매중개자 영업 신고 및 처분 등을 소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대한숙박업중앙회	•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도 미신고 숙박업 처벌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인터넷 기업협회	• 전자상거래 특성상 중개 대상 상품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점 고려 필요 • 신고서 위조 유효성 등 확인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검증권한의 부재 보완 필요
네이버	• 통신판매업자를 직접 규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한 개정 필요 • 전자상거래 특성상 중개 대상 상품을 일일이 모니터링 어려움
에어비앤비	• 숙박시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발전 저해 우려되며,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확대,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국정방향에도 반대됨 • 자발적 조치(신고증 제출 의무화)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 퇴출 중 •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시행 시기 유예 필요

문 의 처

02)6788-5506

【참고1】	숙박시설 주요 유형별 업소현황(2015~2023)
-------	-----------------------------

구 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 정비법
	소계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소계	호텔	휴양콘도 미니업	관광 펜션	한옥 체험	외국인 도시민박	농어촌 민박
‘15년	30,888	29,016	1,872	4,079	1,279	209	390	992	1,209	23,819
‘16년	30,971	28,657	2,314	4,780	1,522	216	388	1,186	1,468	24,422
‘17년	30,957	28,242	2,715	5,208	1,617	227	410	1,265	1,689	25,974
‘18년	30,644	27,471	3,173	5,673	1,883	228	468	1,286	1,808	27,329
‘19년	30,497	26,886	3,611	6,230	1,983	235	604	1,359	2,049	28,244
‘20년	29,679	25,746	3,933	6,194	2,064	237	563	1,389	1,941	27,955
‘21년	30,049	25,449	4,600	6,353	2,130	242	602	1,505	1,874	28,702
‘22년	29,733	24,655	5,078	6,821	2,155	239	653	1,730	2,044	30,866
‘23년	29,948	24,330	5,618	3,391	2,353	248	790	1,930	2,714	33,093

【참고2】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건수 (보건복지부)
--------------	------------------------------

<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건수 >

연도	아파트, 주택 (단독·다세대·연립 등)	오피스텔	숙박시설	그 외	총 계
2021	-	-	-	-	170
2022	-	-	-	-	367
2023	140(60%)	37(16%)	5(2%)	51(22%)	233
2024	162(60%)	70(26%)	7(3%)	31(11%)	270

* 소관시설별 관계부처** 및 광역·기초 지자체 위생·농정·관광과 일제점검 결과 (일반적으로 1~2월, 4~6월 사이에 실시)

** (복지부) 일반·생활숙박업, (문체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식품부) 농어촌민박업

*** 시설유형별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건수는 '23년 이후 점검결과부터 관리·취합

< 에어비앤비 불법숙박 적발건수('24.1~10월 적발건수) >

(단위 : 개소)

구분	적발건수	구분	적발건수
총계	385	경기	9
서울	21	강원	6
부산	133	충북	3
대구	40	충남	5
인천	13	전북	9
광주	1	전남	6
대전	4	경북	20
울산	1	경남	9
세종	30	제주	75

* 지자체 위생부서 및 관광부서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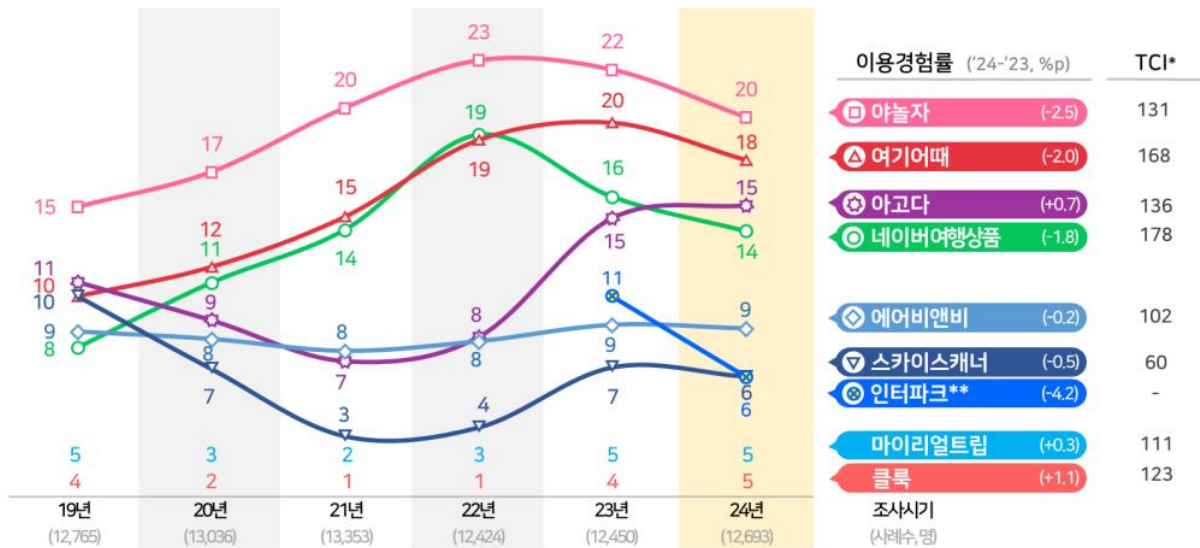
** 타 온라인 플랫폼(아고다, 부킹닷컴 등)의 미신고 숙박업 적발건수는 미보유

【참고3】	여행상품 플랫폼(OTA) 이용 경험 관련 통계 (컨슈머인사이트)
-------	-------------------------------------

< 지난 1년간 여행상품플랫폼(OTA) 이용경험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난 1년간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54%	50%	48%	55%	59%	57%
1인 평균 이용 플랫폼 수	1.7개	1.9개	2.3개	1.7개	2.2개	2.1개
조사 사례수 (명)	12,765	13,036	13,353	12,424	12,450	12,693

< 여행상품플랫폼(OTA) 이용경험률 추이 >



Q. 지난 1년 동안에 이용해본 적 있는 여행 상품 예약 전문 채널은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총 24개 브랜드 제시, '24년 이용경험률 5% 이상의 9개 브랜드만 비교함)

*TCI(Travel Corona Index: 여행 코로나 지수)는 '24년 결과값을 '코로나 발생 전년('19년) 결과값으로 나눈 수치임

** 인터파크는 '23년부터 조사 대상에 추가됨

【참고4】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 위생관리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 (4)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 (1) 원수는 별표 2 1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청소해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럭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 (3)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4)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가)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 (나)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